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 9. 1(수)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0. 8. 19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0. 8. 20

라. 상정일자 : 2010. 8. 31 [제186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검토보고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10년도 지방채발행계획에 따라 정기분 지방채를 발행하여 왔으며, 금번 제1차 변경계획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건설」 추가발행과 일부 사업을 타 사업으로 변경·발행함으로써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 지방자치법 제124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2010년도 지방채 정기분 승인내역은 총 18건 496,753백만원이며

- 금번 변경사항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건설」 140,000백만원 추가발행과 「연희공원 조성사업」 20,000백만원 발행계획을 「백운역광장 조성사업」 등 8건으로 변경·발행하고자 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건설을 위하여 서구 주경기장 등 총 6개 경기장의 부지 보상비를 당초 3,500억원 보다 1,400억원 증가한 4,900억원으로 증액 발행하고,
 - 연희공원 조성사업의 1단계 추진계획을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과 연계되는 공원지역의 사유지를 우선 보상하는 것으로 2010년 지방채로 발행키로 했던 200억원은 백운역광장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의 재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임.
 - 2010년도 지방채 변경계획안이 승인되면 총 발행액은 6,368억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 2,900억원 범위를 3,468억원 초과하나,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3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아시아 경기대회 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채 발행 한도액

-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100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조)

※ 2010년도 인천시 본청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

- 2008년 일반재원(28,997억원)의 10%인 2,900억원
참고) 일반재원 = 지방세+보통교부세+경상적세외수입+조정교부금 등

○ 주요 사업의 지방채발행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건설사업’은

- 2010년 지방채 발행계획 규모를 3,500억원에서 1,400억원 증액한 4,900억원으로 증액코자 하는 것으로서 변경사업이 승인되면 아시아경기대회 사업의 지방채 발행규모는 총 6,750억원에 이르게 됨.
(’08년도 400억원, ’09년도 1,450억원)

- 금번 증액하게 되는 1,400억원의 용도를 보면

서구 주경기장 건설을 위한 659억원을 포함하여 남동·계양·선학·십정·강화경기장 등에 대한 경기장 부지 보상비로 사용하게 되며, 경기장 부지 보상비 소요액의 총 97%의 예산을 확보하게 될 것임.

<지방채 추가발행 경기장 부지 보상비>

경기장별	예산액(지방채)	내역		비고
		수용보상	협의보상	
총계	1,439(1,400)	600	839	
서구경기장	698(659)	600	98	수용재결 진행중
남동경기장	41(41)		41	협의보상 진행중
계양경기장	49(49)		49	"
선학경기장	483(483)		483	"
십정경기장	156(156)		156	"
강화경기장	12(12)		12	"

※ 추경 소요액 1,439억원 = 1,400억원(지방채) + 39억원(자체 예산절감액)

<연차별 경기장 부지 보상비 소요액>

사업명	보상비	예산 확보액	부족 예산액			비고 (단위: 억원)
			계	2010추경	2011년	
경기장 부지 보상	6,871	5,212	1,659	1,439	220	

- 다만, 경기장 부지 보상금액을 위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1,400억원에 대한 각 경기장의 보상 집행과정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토지 보상비를 위한 지방채 발행시기와 관련하여 지방채는 차입시부터 이자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상시기와 자금의 수요시기를 정확히 판단하여 차입에 따른 이자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경기장 부지 보상예산 총괄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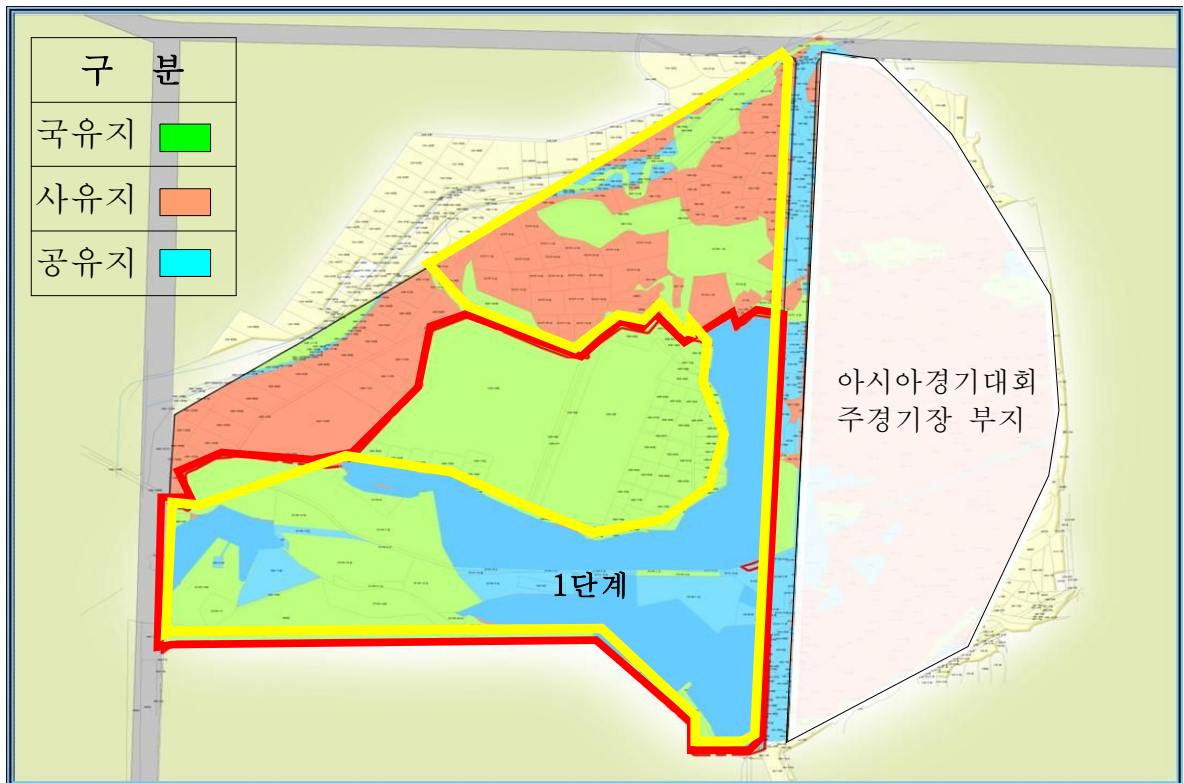
사업명	보상액	예산 확보액				부족 예산액	비고	
		계	2008	2009	2010		보상비 집행액	보상율 (%)
계	6,871	5,212	299	1,533	3,380	1,659	4,975	81.7
서구경기장 (추가부지)	2,166 (278)	1,288 (-)	289 (-)	714 (-)	285 (-)	878 (278)	1,254 (-)	77.9 (-)
남동경기장	1,011	970	10	799	161	41	945	96.4
계양경기장	989	940	-	16	924	49	939	95.1
선학경기장	1,737	1,254	-	4	1,250	483	1,154	68.8
십정경기장	751	595	-	-	595	156	524	76.7
강화경기장	177	165	-	-	165	12	159	96.5
송림경기장	40	-	-	-	-	40	-	-

▶ ‘연희공원 조성사업’ 은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공원으로 총 사업비 규모가 2,888억원으로 2014년까지 1단계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2010년에 200억원의 지방채발행 계획을 승인한 바 있음.

- 그러나,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과 연계되는 공원지역 사유지보상의 필요성과 봉수대로 경관개선 및 환경정비가 시급하여 1단계 사업의 추진계획을 일부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연희공원 1단계 추진변경 계획도 ▷



※ 1단계 당초 계획지역 1단계 변경 계획

- 공원조성의 사업시기 단축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기존 1단계 지역의 국유지 보상계획 대신 2단계의 사유지를 연차적으로 보상하게 하여 2010년도 소요사업비를 119억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연희공원사업 지방채 200억원을 백운역 광장 조성사업 등의 8개 사업으로 대체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백운역 광장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은

- 2010년도 본예산에 시비·국비·광특회계로 전액 또는 일부 편성된 예산을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에 따라 시비를 지방채 재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지방채사업은 지방 재정투융자 심사시 재원조달 계획상 지방채차입 계획이 있는 사업만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 사업은 지방채발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향후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2011년도 우리시의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037억원으로 금년의 2,900억원 보다 86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향후, 시 현안사업에 지방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으로 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게 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채무관리 계획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전원기, 차준택 위원

- 1,400억원은 경기장 부지 보상비용으로 사용하는데 서구 경기장 보상 문제는 주경기장 토지보상과 관계가 없는지?
- 경기장 건설 연도별 투자계획(2010~2014)에 따르면 주경기장 건설 신축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 가용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추계를 좀더 정확히 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것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연희공원사업에 있어서 작년 계획한 세부사업계획서와 추경에 반영된 119억원의 자료를 제출바람.

<답 변>

- 정태욱 기획관리실장, 이정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 토지 보상율이 75%인 상황에서 경기장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100% 보상을 하여야 혼란이 없음.
 - 국비 포함사업여부에 따라 자료가 다르며,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는 주경기장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홍성욱, 신동수, 이재병, 김기홍, 전원기, 차준택 위원
- 나. 반 대 : 허회숙 위원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6명, 반대 1명)

7. 소수의견 요지

- 지방채 추가 발행 변경계획 반대(허회숙 위원)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부. 끝.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주요 변경내역

(단위:백만원)

당 초			변 경		
사 업 명	발행액	기 채 선	사 업 명	발행액	기 채 선
합 계	496,753		합 계	636,753	
2014 인천아시아경기 대회 기반시설 건설	350,000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2014 인천아시아경기 대회 기반시설 건설	490,000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1개 사업	20,000	기획재정부	8개 사업	20,000	금융기관
연희공원 조성 사업	20,000	기획재정부	백운역광장 조성 사업	2,100	금융기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000	
			우회도로 ~ 동국제강간 도로개설	2,300	
			초지대교 ~ 온수리간도로개설	2,700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2,000	
			서운동삼정동간 도로개설	500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4,000	
			예단포 ~ 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	4,400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건설」 140,000백만원 추가 발행
 「연희공원 조성사업」 발행총액 변동없이 차입선 및 8개 사업으로 변경 발행